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꼬꼬영판

· 3월 4주차 ·

해설편

일주일에 5문항으로 가볍게 끝내는
생활과 윤리 주간지!

“Are You Ready For This?”

점심생운 3월 4주차

점심생운™

김지호 (저동고)
권예림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김영우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류성민 (건국대 철학과)
배민경 (성신여대 교육학과)
서예은 (청주중앙여고 교사)
안재현 (건국대 경영학과)
양승언 (강원대 윤리교육과)
유영우 (대인고)
이동욱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현승 (울산여고)
진해인 (교육학 전공)
탁성용 (서울시립대 철학과)
홍찬혁 (인하대 경영학과)
김보민
문인성
서지영
이수진
이세라

외 1인

펴 낸 일 2024년 03월 24일
펴 낸 곳 점심생운™
저 자 점심생운™
문 의 EMAIL_ lunchethics01@gmail.com | INSTAGRAM_ @lunchethics

점심생운은 질 좋은 자료를 무료로 배포함에 있어 교육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점심생운™에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가공·판매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점심먹고 심심하면 생활과 윤리

점심생운

· 3월 4주차 ·

해설편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영역 ·

생활과 윤리 정답

1	⑤	2	③	3	②
4	⑤	5	④		

해설

1.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현대 기술이 초래한 인간 행위 본질의 변화에 주목한 요나스는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칸트의 정언명령의 형식을 책임 윤리적으로 변용한 '생태학적 정언명법'을 주장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책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또한 강조한다.

[정답 찾기]

⑤ 요나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요나스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인간이 미래 세대와 자연에 지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처럼 일방적이기에 비호혜적이고, 비상호적인 특징을 지닌다.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한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2017학년도 6평]

[오답 피하기]

① 요나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또는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견 차이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본다. 이때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은 현세대가 자연, 미래 세대 등과 같은 새로운 대상을 찾아내어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② 요나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 부과와 관련되지 않고 행위되어야 할 것의 결과와 관련된 전혀 다른 개념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나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책임의 대상은 나의 밖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나의 권력에 의존하고, 또 나의 권력에 의해 위협을 받음으로써 나의 권력의 작용 영역 안에 있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다고 본 요나스는 인간의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즉 미래의 위협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명령을 강조하였다.

이제 우리는 지구 전체 생명에 대해 권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은 윤리 이론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생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③ 요나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선의 인식보다 악의 인식이 더 쉽다고 본 요나스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이때의 공포의 본질적 속성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이며, 이는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 윤리학의 책임 개념과는 다르다.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위험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의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2022학년도 수능]

- ④ 요나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요나스가 염려하는 가장 큰 미래의 위협은 '인류의 자멸', '인류의 종말'이다. 그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매래에 인류가 실존하지 못할 위협을 고려하여 새로운 책임 윤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새로운 책임 윤리로서 미래의 인류 존속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 하라.”

[요나스, 『책임의 원칙』]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이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요나스, 『책임의 원칙』]

요나스는 직접적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결과 또한 숙고하여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예방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2.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의 환경 윤리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쾌고 감수 능력의 소유의 여부를 제시하며, 동일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여 대우하

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각자 고유의 선을 지니므로 도덕적 고려와 존중의 대상이 되며 생명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선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태계 보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정답 찾기]

ㄴ. (싱어 X, 테일러 O, 레오폴드 X)

테일러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테일러에게 도덕적 지위를 갖는 대상이란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개체를 의미한다. 테일러는 동식물 모두 인간처럼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생명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생명 중심 관점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자연계와 생명을 볼 때, 우리는 각 생명체의 매 순간 존재를 예리하고 명확하게 인식한다. 특정 유기체에 주의를 집중하면 우리가 개체로서 그 유기체와 공유하는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들의 행동과 내적 과정은 그들의 선의 실현을 중심으로 어떤 경향성을 끊임없이 형성한다. 우리의 선의 내용과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수단이 그들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서 실증되는 목적론적 질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근본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싱어는 인간 외의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만, 식물까지 포함한 테일러와 달리 그 범위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일부 동물로 제한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인간의 평등을 위한 최선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영역은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으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싱어, 『동물 해방』]

레오폴드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또한 레오폴드는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로 볼 때 인간은 대지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다고 본다.

대지가 공동체라는 것은 생태학의 기초 개념이지만, 대지가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다.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려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르. (싱어 O, 테일러 O, 레오폴드 O)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싱어는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피하였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 친절할 경우 인간에게도 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것이 예컨대 아퀴나스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하는 참된 이유라면 이는 전적으로 종(種) 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이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을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싱어, 『동물 해방』]

테일러는 인간 외의 생명체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그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간주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테일러는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목적론적 삶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테일러의 자연 존중에서 비롯된 네 가지 의무〉

- ◎ 불침해의 의무: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 불간섭의 의무: 생명체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태계의 진행 과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 신의의 의무: 동물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정의의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

[비상 생윤 교과서]

레오폴드는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닌 평범한 구성원이라고 보며, 인간은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비롯하여 공동체 자체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 관계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참고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있다고 보는 학자는 칸트이다.)

[오답 피하기]

7. (싱어 X, 테일러 X, 레오폴드 X)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어떤 존재자가 이익 관심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라고 본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를 곧 이익 관심을 갖는 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싱어는 지능이나 합리성과 같은 특성으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임의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에도 지능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자세를 옹호하는 도덕적인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싱어, 『동물 해방』]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모두 지능이나 합리성이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테일러는 고유의 선을 갖고 자기 보존의 경향을 지닌 생명체라면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며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므로 인간은 고유한 선을 지니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성 생윤 교과서]

레오폴드는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생물을 포함한 대지 공동체 전체로 간주함으로써 지능이나 합리성처럼 공동체 구성원 일부의 특성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전체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한다.

[금성 생윤 교과서]

드. (싱어 O, 테일러 O, 레오폴드 O)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모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싱어에 따르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 관심은 인간과 평등하게 고려받아야 하지만, 그 동물에 대한 간섭이 공리를 증진시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심각한 질병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은 동물에 대한 간섭이 불가피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테일러는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를 제시하며 인간의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간과 인간 외 생명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 원리를 적용하여 생명체를 간섭하더라도 인간의 이해관계를 우선할 수 있다고 본다. 먹이를 구하려 도시에 나타난 야생동물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야생동물을 위협하거나 때로는 죽여서라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처럼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조건부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관계와 (야생)동식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인간 이외 유기체의 안녕과 인간의 안녕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나 한쪽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쪽의 안녕이 증진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인간과 인간 이외 존재 사이의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우선순위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자기 방어 원리 : 자기 방어는 해롭고 위험한 유기체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해롭고 위험한 유기체는 그의 활동이 도덕적 행위자로 존재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신체를 필요로 하는 실체들의 생명과 기초 건강을 위협하는 유기체이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의 선과 구분되는 대지 공동체 자체의 선(혹은 도덕적 지위)을 인정하며 생태계 전체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레오폴드는 어떤 개체의 존속이 대지 공동체의 선과 상충하여, 그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생태계 전체의 상태를 개선하고 보존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지 윤리에서는 개체로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을 중요시한다.

[비상 생운 교과서]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로서(엄밀히 말하면 공리주의자는 아니다. 유용성을 중시하는 유용주의가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베카리아 이후에 등장한 이론. 하지만 교육과정상 공리주의자로 보아도 무방함.) 형벌은 보편적 도덕 법칙, 즉 유용성의 원리(공리의 원리)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본다.

3. 홉스와 루소의 국가관

[정답] ②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홉스, 을은 루소이다. 홉스는 개인이 언어나 행위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이며,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대표한다고 간주된다면 이는 '인위적 인격[리바이어던]'이라고 주장한다. 홉스는 이의 근거로 타인이 그에게 그 행위의 권리를 위임했기 때문임을 제시한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로 완전히 양도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루소는 개인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로 두며,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7. 홉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다. 홉스는 시민의 최고 이익을 '안전'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계약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폭력이나 계락을 써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배하여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

[홉스, 『리바이어던』]

반면 루소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루소는 힘과 자유를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 도구라고 보며, 인류의 진정한 번영을 마련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자유라고 강조한다.

힘을 합하는 것은 오직 여럿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일차적인 도구들인데, 어떻게 그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야 하는 보살핌도 등한시하지 않으면서 이 도구들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루소, 『사회 계약론』]

홉스와 루소 모두 인간의 최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입장을 나란히 하지만, 위와 같이 인간의 최고 이익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안전'이 시민의 최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홉스와 달리, 『사회계약론』 곳곳에서 루소는 안전보다 '자유'를 강조하는 웅변을 펼친다.

[루소, 『사회 계약론』(역자 해설)]

르. 루소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다. 루소는 개인은 계약을 통해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일반 의지의 감독 하에 국가에 양도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루소는 이 권리 양도 행위야말로, 완전한 계약이라고 본다.

각 회합원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로 완전히 양도된다. …(중략)… 게다가 이것은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는 양도여서, 최대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며 어떤 회합원도 요구거리를 가질 수 없다. 만약 개별자들에게 몇몇 권리가 남아 있게 되면, 각자는 어떤 사안에서 스스로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어 곧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 되길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과 공중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 줄 공통의 상급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상태가 계속될 것이며, 회합은 필연적으로 압제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된다.

[루소, 『사회 계약론』]

그러나 루소의 사회 계약에서 개인이 양도하지 않는 권리(주권, 입법권 등…)가 있는데, 이 권리들의 정체는 뭘까.

《루소 ‘권리의 양도’ 보충 설명》

앞의 선지에서 알 수 있듯, 루소의 사회 계약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회에 양도한다. 그렇지만 루소의 사회 계약에서 개인의 주권과 입법권 등 여러 권리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을 붙이고자 한다.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사회계약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지녔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후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이행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 예로 주권과 입법권을 들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루소가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루소의 사상을 알리는 것을 생략한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사회 수중에 양도한다. 사회 형성을 위해 개인이 내놓은 이러한 희생에 대해 사회가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권과 입법권 역시 사회가 형성된 이후 생겨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을 통해 사회 상태로 들어와 사회 내에서 출현[발생]하는 권리는 양도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것이다.

반면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이 모든 힘과

권력을 양도하지만,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양도, 또는 포기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대신으로 자기 자신에게 양도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갖고자 하는 어떤 다른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인간은 어떠한 언행이나 그 밖의 표시로서도, 포기하고 또는 양도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약간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홉스가 제시한 네 가지의 양도되지 않는 권리는 아래와 같다.

- 홉스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 -

- ①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
- ② 저항의 권리
- ③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
- ④ 감금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

[애링턴, 『서양윤리학사』 제 6장 ‘홉스’]

따라서 홉스는 해당 질문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ㄴ. 홉스와 루소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은 하나의 인격체임과 동시에 집합체이며, 리바이어던은 그 자체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대리인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은 시민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인 셈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조건들을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을 어느 한 개인이나(예를 들면 왕과 같은) 개인들의 집합체에(예를 들면 의회와 같은) 양도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접촉하여 결국 각각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나는 당신들이 이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합체에 당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행위를 승인한다는 조건 하에서 나 또한 나 자신을 지배할 권리를 그에게 또는 그 집합체에 양도하고 이를 승인한다”

[애링턴, 『서양윤리학사』 제 6장 ‘홉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인격체(또는 집합체)에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통치자에게 양도한 우리 자신의 권위이기도 하다. 이후로 통치자의 행위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되며 그는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된다. 만일 통치자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애링턴, 『서양윤리학사』 제 6장 ‘홉스’]

루소는 주권이 일반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양도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권자 역시 주권을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동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루소는 주권자는 오직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고, 이는 곧 자체적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말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기에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힘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다.

[루소, 『사회 계약론』]

- ㉔. 홉스와 루소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홉스의 사회 계약에서 개인의 소유권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홉스는 이와 같은 상황이 ‘모든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코먼웰스[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나아가 홉스는 소유권은 코먼웰스[국가]가 생긴 결과이며, 이는 곧 소유권의 발생은 국가가 탄생한 계약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의 발생은 코먼웰스가 생긴 결과이며, 코먼웰스는 그것을 대표하는 인격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것은 주권자만의 행위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루소의 사회 계약에서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이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루소는 정치체와 주권의 설립, 정치법의 실행 이후, 다시 말해 사회 계약 전의 ‘점유’가 계약을 통해 ‘권리’로 변화하며, 변환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본다.

정치체와 주권이 창설되고 사회계약이 모든 권리의 토대를 마련한 후에야 점유의 사실을 소유의 권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루소에게 소유권은 자연적 권리로서 자연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법의 실행 이후에만 가능하다.

[루소, 『사회 계약론』(역자 주석)]

또한 루소는 소유권이 인간의 합의이자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인간의 합의와 제도가 이루어진 후에 등장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소유권은 인간의 합의이고 제도일 뿐이므로 누구나 마음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처분할 수 있다.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적 전쟁이나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은, 자연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소유권이 없기에, 사회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법의 권한 아래 있기에 존재할 수 없다.

[루소, 『사회 계약론』]

4.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교정적 정의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다. 칸트는 형벌을 하나의 정언 명령으로 보아, 형벌을 면하거나, 동등성의 원리에 어긋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형벌의 정당화 근거는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에 있다고 보며,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계약의 목적에 반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지에 따라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카리아는 사형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살인 행위일 뿐이라고 보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것을 계약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 ⑤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살인자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同種性)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또한 칸트는 사형에 가담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본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반면,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 등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베카리아에게 사형제도는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베카리아: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2024학년도 6평]

[오답 피하기]

- ① 칸트가 루소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루소는 사회 계약에 근거한 형벌을 주장한다. 루소는 계약 당사자들이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보는데, 사회 계약시 계약자들은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인자가 될 경우 사형을 받겠다는 것에 동의한다.

루소는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도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것에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 사형 제도를 찬성하였다.

[지학사 생운 교과서]

또한, 루소는 살인자는 정신적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으로, 시민보다는 적으로 간주하여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하거나, 공공의 적으로서 처형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살인자]는 국가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계약위반자로서 추방당하여 국가에서 잘려 나가야 한다. 혹은 공공의 적으로서 죽음을 통해 제거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적은 가상인격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고, 이 경우 패자를 죽이는 것은 전쟁법상 정당하기 때문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 ② 루소가 칸트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종류의 성질, 즉 동종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다른 종류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한다고 해도,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생명과 살인자의 고통은 같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칸트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만 동등성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본다.

공적인 정의가 원칙과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평등)의 원칙이다. …(중략)…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生)과 사(死) 사이에 동등성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 ③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만, 루소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리주의자인 벤담, 베카리아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자가 아닌 루소도 공동체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형벌의 효과를 긍정한다. 그 이유는 ‘일반 의지’는 항상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전체 인민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good of all)’ 이 정확히 말해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탐구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일반의지는 자유의 원칙으로 시작하여 평등의 원칙을 확보하며, 확보된 평등은 자유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유와 평등은 인민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입헌체계가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김용민, 『루소와 공화주의』]

반면, 칸트는 형벌이 사회를 위한 다른 어떤 선, 유용성 등을 위해 가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은 법에 국한되어야 함”은 ‘죄형 법정주의’를 가리키는 위당인데, 이는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형벌론 사상이 모두가 동의한다. 죄형 법정주의란, 형벌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도가와 불교의 죽음관 비교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가) 사상은 도가(장자)이고, (나) 사상은 불교(석가모니)이다. 도가는 삶과 죽음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취산(聚散)]으로 본다. 따라서 죽음은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현상이므로 죽음에 초연할 것을 강조하며, 슬퍼하거나 애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업(業)'으로 인해 현생이 결정되며, 중생이 죽은 뒤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것을 '윤회'라고 말한다.

[정답 찾기]

④ 불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4가지 고통을 말하며 삶인 생(生) 역시 고통으로 본다.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윤회를 끊어내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학(三學: 계정혜)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여덟 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인 팔정도를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체의 생명체는 모두 죽어 수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간다. 업(業)에 따라 각각 선악의 과보를 받는다. 복을 닦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도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부파, 『아함경』]

[오답 피하기]

① 도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도가에서는 생사를 사계절에 비유하고 기(氣)의 변화로 설명한다.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이다.

육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플라톤, 『파이돈』]

② 도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도가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장자, 『장자』]

③ 불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불교에서는 생사

일여(生死一如), 즉 삶과 죽음은 하나임을 주장한다.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生死一如]로 여겨야 한다.

[2023학년도 9평]

석가모니는 윤회설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生死一如]'라고 보았다.

[비상 생윤 교과서]

⑤ 도가만의 입장이다. 도가는 삶을 기가 모이는 과정, 죽음을 기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간이 겪는 네 가지 고통중 하나이자 오온의 해체라고 보며, 오온이 해체된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굴레를 통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삶과 죽음은 이어져 있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 그 근원이고 시작인지 알 수 있겠는가.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장자, 『장자』]

오온(五蘊)의 새로운 구성이 태어남이고 그 해체가 죽음이다. 죽음은 현세의 업보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생멸(生滅)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생사(生死)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2019학년도 9평]

**** 수고하셨습니다 ****

◎ 오류 및 오타 문의 :

lunchethics01@gmail.com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